

2015.08.27

세인
소식지
www.seincustoms.com

개별소비세 인하 탄력세율 시행

▶ 개요

- 기획재정부에서는
물가상승 및 소득수준의 상향, 메르스로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 등을 감안 하여, 개소세 과세기준 합리화 및 부담완화의 필요 목적으로 8월 26일(수) 자동차 및 고급 소비재 물품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인하를 발표하였습니다.

▶ 개별소비세 인하 내용

- 적용대상 : 2015년 8월 27일(목) 부터 수입신고분 또는 제조장에서 반출되는 물품부터 해당
- 세율 인하 :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"탄력세율(기본세율의 30%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세율을 인상 또는 인하)"을 적용.

2015.08.27

세인
소식지
www.seincustoms.com

품 목	개 선 방 안
승용차	15.8.27~15년 말까지 5%→3.5%
대용량 가전제품	15.8.27~15년 말까지 5%→3.5% (*16.1.1부터 폐지)
녹용, 로열젤리, 방향용화장품(향수)	15.8.27~15년 말까지 7%→4.9% (*16.1.1부터 폐지)
가구, 사진기, 시계, 가방 등	15.8.27부터 기준가격 상향 조정 (*가구 1조당 800만원 → 1,500 만원 1개당 500만원 → 1,000 만원 그 외 기준가격 200만원→500만원)

▶ 시행 방안

- 기획재정부에서는 본 사안에 대해서 관세청 및 국세청 등 관련 기관과 사전 준비가 되어 있던 발표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되어 다음의 절차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.

① [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](#)

→ ② [관세청 시스템 개선](#)

→ ③ [수입신고시 인화된 세율 적용](#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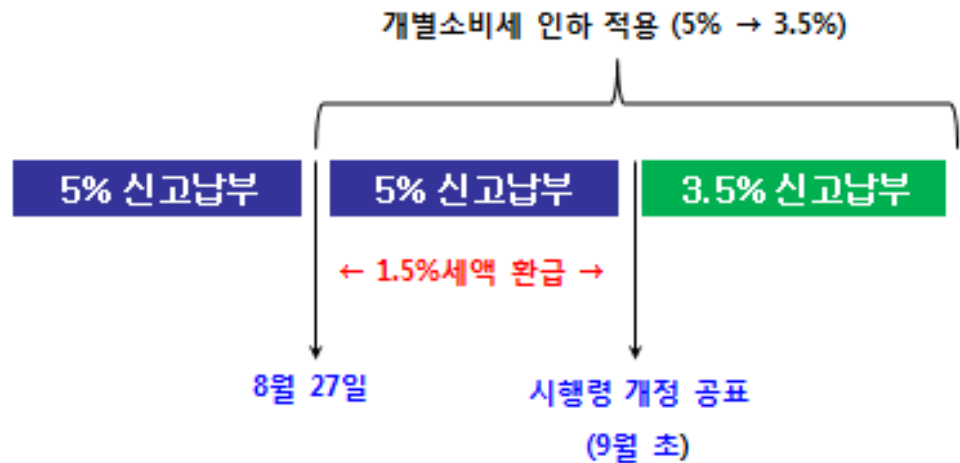
- 기획재정부 질의결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이 9월 초에 공표될 예정으로, [시행령 개정 공표 전까지는 기존의 세율 그대로 수입신고](#)를 진행해야 합니다.

2015.08.27

세인
소식지

www.seincustoms.com

- 시행령이 개정발표 이후, 8월 27일(목) 부터 시행령이 발표 되는 날까지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환급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



(소급적용)

대상물품	환급대상	환급신청기간
①탄력세율 적용 물품	'15.8.26. 이전 수입신고물품 중 '15.8.27. 당시 보유(미판매)물품으로 보세구역 환입건	공포일'~10.5.
①탄력세율 적용 ②기준가격 상향 물품	'15.8.27~공포일 전일 수입신고건	공포일~10.25.

* 공포일은 '15.9.4로 예정하고 있으나, 부처 협의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음

※ 이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정확한 내용으로 재 안내 드리겠습니다.